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4. 4 선고 2023나122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4. 4 선고 2023나1229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1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이창만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4. 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1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17.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18.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하는 특수공법인이고, B은 2011. 10.경부터 2018. 8.경까지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사람이며, 피고는 1983. 5. 12. B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B의 의료법위반 행위 및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B은 2018. 10. 10.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04호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J와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1. 10. 26.부터 2017. 12. 5.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38,637,474,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9. 12. 19. 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24.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의 처분행위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에게 2016. 11. 21. 위 부동산 중 10분의 9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2018. 8. 14. 위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8. 1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미납환수금액

1)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1)에 따라 2019. 6. 10. B에게, B이 원고로부터 2013. 5.경부터 2019. 5.경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6,905,263,34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9. 7. 4.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B에 대한 미납 환수금 및 연체금은 2021. 10. 18.을 기준으로 합계 42,519,065,060원(= 원금 39,599,197,900원 + 연체금 2,919,867,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B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늦어도 2019. 10.경에는 B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0.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원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담당 직원이 그 업무를 위해 B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수금 내지 부당이득금 추심보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B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이나 변동 상황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❷ 또한 원고 측에 보관되어 있던 과세자료를 통해서는 특정 시점에 B가 보유한 재산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피고에게 이전되어 위 부동산이 B의 재산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 직원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B의 다른 재산처분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20. 12. 초순경 사해행위취소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448호 및 같은 법원 2020가단107493호)을 제기하긴 하였으나, 위 각 소송에서 문제된 B 소유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서로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위 각 소제기 전인 2020. 11.경 발급된 점, ④ 원고의 부당이득금 추심 등 담당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를 미룰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담당 직원이 2019. 10.경 B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및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2021. 10. 8.에야 발급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 이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사실 및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등 참조),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2011. 10.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201724 판결 참조), 위 요양급여비용 중 2013. 5.경부터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징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징수금채권'이라 한다)도 가진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³⁾ 내지 징수금채권⁴⁾은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징수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B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징수금채권 중 적어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일 전인 2016. 11. 8.까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중 미납 원금은 26,890,884,950원,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일 전인 2018. 8. 10.까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중 미납 원금은 37,606,059,560원이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한 징수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이상,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 B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B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환수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징수금채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5)에서 정한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개별 요양급여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행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정할 뿐이며, 같은 법 제57조가 정한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0조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이고, 또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를 3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징수금채권의 최초 발생일인 2013. 5.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B의 무자력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 처분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B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2016. 11. 17. 기준 26,890,884,950원에 이르므로, B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순번	재산	2016. 11. 17. 기준	2018. 8. 13. 기준	산정 근거
1	이 사건 부동산	500,000,000원	50,000,000원	감정가액 (2022. 8. 17. 기준)
2	경남 함안군 R 전 1269㎡ 중 1/2 지분	12,499,650원 ⁶⁾	14,339,700원 ⁷⁾	각 증여계약 무렵에 가장 가깝고 피고에게 유리한 2017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3	경남 함안군 S 전 1088㎡	13,164,800원 ⁸⁾	15,340,800원 ⁹⁾	
4	경남 함안군 T 전 241㎡	896,520원 ¹⁰⁾	1,060,400원 ¹¹⁾	
소계		526,560,970원	80,740,900원	

6) 19,700원/㎡×1,269㎡×1/2

7) 22,600원/㎡×1,269㎡×1/2

8) 12,100원/㎡×1,088㎡

9) 14,100원/㎡×1,088㎡

10) 3,720원/㎡×241㎡

11) 4,400원/㎡×241㎡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B의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B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당시 “2015년경 매스컴에서 사무장병원이 문제 되는 것을 보고 슬슬 걱정이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자신 명의 재산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B는 적극재산 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B와 피고의 공유재산이므로 그 중 피고의 재산에 해당하는 1/2 지분 이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제공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금원 제공이 취득자금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부부간 정당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당시는 아직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새삼스레 피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❷ 창원지방검찰청은 2017. 12. 7.경 B의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 범행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8. 10. 10. B을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하였는바(B은 검찰 수사 이전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경부터 사무장병원에 관한 언론보도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B이 받은 수사를 비롯해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❸ B은 이 사건 병원 운영 당시 급여, 판공비 명목으로 월 약 1,200~1,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역시 같은 기간 위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2012. 3.경부터 2018. 5.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월 약 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은 정당한 급여를 넘어 위 병원의 운영수익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역시 B의 사무장병원 운영이라는 위법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❹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B이 원고에 대한 거액의 환수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B에게 크게 담보가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❺ B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10 지분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 W, 피고의 자매 X 앞으로도 그 명의 재산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B의 일련의 처분행위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❻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경위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등기명의를 일치시킨 것’이라고 하였다가(2022. 5. 31.자 준비서면 참조), 이후에는 ‘B의 건강 악화로 향후 상속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2022. 10. 17.자

준비서면 참조)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6년경부터 자신의 형제자매인 Y, 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2022. 11. 15.자 준비서면 참조) 임차인들이 등기명의를 없는 피고와 계약하기를 꺼려하여 지분을 이전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며, 임대차나 상속관계의 편의를 위해서였다면 굳이 9/10 지분과 1/10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참조),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인 2020.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U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피고)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8. 17. 기준 감정가액이 5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위 500,000,000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위 370,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은 원고가 구하는 3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3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표현덕, 판사 박지연, 판사 이병호

별지

- 1)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2) 갑 제6호증의 2면 이하.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참조).

3) 위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원고의 지급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B은 위 지급결정의 상대방인 요양기관 개설명의자가 아니므로 위 지급결정의 무효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다.

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의 취지 참조.

5)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